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사유

2005. 12월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안 제1조 내지 제7조)

-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 위원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촉함으로서 위원의 책무 강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6. 5. 10 ~ 5. 3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마. 기타 : 표준조례안 시달(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71, 2005.12.6)

### 4. 검토의견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구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원칙), 제4조(설치 등), 제5조(기능),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은 종전과 같으나 “동사무소”를 “동”으로 바꾸고
- 안 제7조(운영)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과 위원회가 협의·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하고
- 안 제11조(이용 등)는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17조(구성 등)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해 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며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를 활성화 되도록 하고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구 등에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며,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게 함으로서 위원의 책무를 강화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